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환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796 |
|----------|-----|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31일

발 의 자 : 김정환, 박기열, 채인묵, 김희걸,
한기영, 오중석, 노식래, 오현정,
박기재, 이호대, 강동길, 최정순,
송정빈, 김제리, 김광수, 유 용,
문병훈, 김기덕, 이광성 의원 (19명)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시장이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인 ‘서울상상나라’에 대해서는 운영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와 관련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서울 상상나라 입장료 감면의 내용을 신설함.
(안 제6조제1항5의2호의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6. ~ 8. (생략)</p> <p>② (생략)</p> | <p>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5의2.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u>사람</u></p> <p>6.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입장료의 감면)제1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함에 따라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 일 경우 자녀 포함), 의상자 및 활동보조자(부상등급 1-2등급의 경우) 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의 입장료 감면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총 비용 ≙ 67,200천원(연 평균 13,440천원)

(단위 : 천원)

| 연도 구분 | | 1차년도 (2020년) | 2차년도 (2021년) | 3차년도 (2022년) | 4차년도 (2023년) | 5차년도 (2024년) | 합 계 |
|------------|-------------------------------|-----------------|-----------------|-----------------|-----------------|-----------------|--------|
| 세입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세출 | 이용료의 감면비용 지원 (제6조제1항제5호의2) | 13,440 | 13,440 | 13,440 | 13,440 | 13,440 | 67,200 |
| | 소계(b) | 13,440 | 13,440 | 13,440 | 13,440 | 13,440 | 67,200 |
| □총 비용(b-a) | | 13,440 | 13,440 | 13,440 | 13,440 | 13,440 | 67,200 |

다. 비용추계 전제

- 2019년 1월 기준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는 146명(의사자 85, 의상자 61)이므로 향후 인원 증감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의사자 유족은 선순위자가 모두 배우자이고, 그 자녀들은 2명으로 가정
- 의상자는 부상등급이 모두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아닌 활동 보조자 1명과 동행하는 것으로 가정
-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는 3명으로 가정
- 위와 같이 가정할 경우 의사자 유족은 255명, 의상자와 활동보조자는 122명, 의상자가족은 183명으로 감면가능 대상은 총 560명이고 영아 및 어르신 등 무료입장대상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배우자 및 자녀 등 대상자 모두 서울상상나라 이용하고 횟수는 연6회로 가정
-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는 만3세이상~65세미만(영아 및 어르신은 무료) 4,000원이며 향후 금액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라. 비용추계 산식

- 서울상상나라 의사상자 등 입장료 면제액 ≙ 67,200천원
- 서울상상나라 의사상자 등 입장료 면제액
 - = $\sum_{i=1}^5$ (연간 서울상상나라 의사상자등 입장료 면제액)_i
 - ※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서울상상나라 의사상자 등 입장료 면제액
 - = 의사상자 등 감면대상자 × 이용횟수 × 입장료
 - = 560명 × 6회 × 4,000원
 - = 13,440천원

4. 작성자

| | |
|--------|------------------------------|
| 시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
| 담 당 관 | 남승우 |
| 정책조사팀장 | 여차민 |
| 주 무 관 | 채소영 |
| | ☎ 02-2180-7942 |
| | e-mail : liz1998@seoul.go.kr |